



홍보실무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01.10.10
개정일	2021. 4.15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입학홍보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홍보실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이 된다. (개정 2007. 8.16, 2021. 4.15)

③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(개정 2009. 2.13)

④ 간사는 입학홍보처 직원으로 한다. (개정 2007. 8.16, 2021. 4.15)

제 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의 대내외 홍보정책
2. 홍보기구조직 및 제도개선
3. 기타 대내외 홍보 관련 주요사항

제 4조 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제 5조 (임기)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6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(개정 2009. 2.13)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7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사무 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07. 8.16, 2021. 4.15)

제 9조 (시행)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 (개정 2009. 2.13)

제10조 (시행 세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